

행정기관명

수신

(경유)

제목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통보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(관리·점유)하고 있는 시설(지역)에 대하여 아래 지정 사유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○○시·도(시·군·구)의 중점관리대상시설(지역)로 지정(변경)·관리하오니 조속히 보수·보강 또는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아 래-

1. 지정 내용

- 지하시설물 명칭:
- 지하시설물 관리자:
- 지정 일시:
- 지정 사유(위험요인):

2. 요청 사항

-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안전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-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시장·군수·구청장^{직인}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 (직위/직급)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